

대구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이진련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79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. 9. 25
발 의 자 : 이진련 의원
강민구 의원
김동식 의원
김성태 의원
김혜정 의원
배지숙 의원

1. 제안 이유

- 여성청소년의 생리 문제는 학습과 건강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구광역시 내 여성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집중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가. 보건위생물품과 여성청소년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
- 나.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 및 방법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보건위생물품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(안 제4조, 제5조)

3. 참고 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보건위생물품”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.
2. “여성청소년”이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11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 및 방법) ① 대구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,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조(중복지원 금지)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. 단,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환수)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.

제6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, 구·군,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7조(권한의 위임)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·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「지방자치법」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생략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보건진료기관의 설치·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오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3. ~ 6. 생략

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

제5조(건강한 성장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,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,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·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, 제2항에 따른 건강·체력 기준의 설정·보급 및 제3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·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